# 강도범꾀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양형위원회

### 1. 개요

■ 의견조회 및 공개 대상인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등을 소개함으로써,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기 본적 이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 수정 배경

- 현재 강도범죄 양형기준은 2011. 3. 21. 수정을 거쳐 2011. 4. 15.부
   터 수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음
- 법률 개정에 따른 설정 범위 및 유형의 정의 수정 필요
- 2016. 1. 6. 상습 강도죄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특정범죄가중법'으로 약칭) 제5조의 4 제3항이 삭제되고, 제5항이 개정됨

#### ■ 수정 절차

- 2019. 6. 10. 제9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강도범죄를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로 의결
- 2020. 7. 13. 제103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
   안 확정·공개
- 2020. 7. 17.~2020. 8. 17.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를 위한 홈페이지 공개
- 2020. 9. 14. 접수 의견 검토 및 최종 양형기준 의결

### 2. 현행 강도범죄 설정 범위(유형 분류)와 법률 변경 내용

## 가. 현행 양형기준

● 기존 양형기준 [유형의 정의] 중 법률 변경과 관계된 부분만 기재

# ()4 | 상습·누범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41조
상습으로 강도(미수범 포함),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 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37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 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 내용

- 2016. 1. 6. 개정, 시행
- 아래 표에는 같은 조항 내에서도 변경된 부분이자 설정 범위 관련 필요한 부분만 표시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가중처벌)
③ 상습적으로「형법」	③ <u>(삭제)</u>
제333조ㆍ제334조ㆍ제336조	
•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형법」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⑤「형법」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u>에도</u>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형법」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 요지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3항: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 재판소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을 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새롭게 처벌 규정을 두되, 그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함

### 3.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내용

### 가. 설정 범위 및 유형의 정의 수정

#### ■ 수정 취지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3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설정 범 위에서 제외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제2호가 추가되는 개정이 되었

#### 으므로 이를 반영

#### ■ 설정 범위 수정

● 설정 범위 중 수정 부분은 아래와 같음: 삭제 부분은 삭선 및 파란색, 추가 부분은 강조 및 붉은색 표시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은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준강도, 준특수강도(형법 제335조), 강도상해 · 치상(형법 제337조), 강도치사(형법 제338조), 상습강도 등(형법 제341조),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 강도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3항), 누범강도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강도상해 재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유형의 정의 수정

● 유형의 정의 중 수정 부분은 아래와 같음: 삭제 부분은 삭선, 추가 부분은 강조 표시

### () 4 | 상습·누범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강도(미수범 포함), 특수강도(마 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경우	<del>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3항</del>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mark>제2호</mark>

### 나. 집행유예 기준 중 '집행유예'를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변경

### ■ 변경 취지

- 2018년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시행된 이상 현행 강 도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행유예'라는 용 어를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수정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포 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를 차단함
- 변경된 집행유예 기준(추가 부분 붉은색 굵은 글씨로 표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li>S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 유예 이상)</li> <li>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위험한 물건의 사용</li> <li>중한 상해</li> </ul>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계획적 범행</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약물중독, 알코올중독</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ul>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